

EU, 바나나 수출국의 중재요청에 부정적 반응

유럽연합(EU)은 남미의 바나나 수출 국가들이 WTO에 EU의 새로운 관세부과를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005년 3월 30일,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온두라스, 과테말라는 EU가 바나나에 부과한 순수관세제도(tariff-only system)의 세율에 대해 중재해 줄 것을 WTO에 요청했다. EU는 이들 국가의 요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유지와 이들 국가와 건설적인 관계를 지속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EU의 주장

EU 농업 및 농촌개발 집행위원인 Mariann Fischer Boel은 이러한 새로운 세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집행위원회는 2001년 도하에서 이루어진 논의에서 승인 받은 바나나 교역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르면 EU는 2006년 1월 1일까지 순수관세제도로 전환할 수 있고, 관세 수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남미 국가들이 요청했던 것입니다. EU의 바나나 수입체제가 변하기는 했지만, 보호 수준이 높아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적용하고자 하는 관세는 WTO에서 규정한 원칙에 합치함은 물론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교역 상대국과 발생할 수도 있는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U는 네 남미 국가와 새로 부과된 관세 수준(230€/t)과 이 수준의 근거가 된 WTO의 방법론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집행위원회는 WTO 의무면제(WTO Waiver) 조항을 통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배경

2001년 봄 유럽공동체(EC)는 바나나와 관련된 오랜 논쟁을 종식하고자 미국, 에콰도르와 협정을 맺었고, 이 결과 할당량 기준(quota-based) 방식이었던 바나나 수입체제를 2006년까지 순수관세제도로 전환하기로 했고, 2004년 이와 관련된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남미의 바나나 수출국들이 내부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결과, 이 논의는 아직까지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현행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하에서의 관세 수준은 680€이다. 현재 EU 체제 하에서는 최혜국대우 국가에서 수입하는 바나나에 대해서 75€/t의 관세를 부과하되, 할당량을 265만 3,000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2005년 1월 31일 EU가 새로 제안하고 WTO에 통보한 관세는 최혜국대우 국가에서 수입하는 바나나에 대해 230€/t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2006년 1월 1일자로 기존의 제도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료: 유럽연합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